



2005년도 LP가스안전기기 보급지원사업 운영지침

● 산업자원부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보조되는 가스안전기기보급지원사업의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 18

산업자원부장관

2005년도 LP가스안전기기보급지원사업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조되는 2005년도 가스안전기기보급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안전기기"라 함은 사용자의 취급부주의 및 제품불량 등에 의한 이상상태를 감지 또는 검지하여 가스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는 제품 또는 부품으로서 동 지침에서는 퓨즈콕에 한하여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정부가 일정 부분의 비용을 보조하여 퓨즈콕이 미설치된 LP가스 사용가구에 대하여 퓨즈콕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공사"라 함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4. "퓨즈콕보급지원사업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한다)"라 함은 사업자선정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사 직원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규모 및 기간)

① 지원사업의 규모는 2,480백만원이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4,000원이다.

②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공사 사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절차)

①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2005. 1. 29.

-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 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공사 사장은 신청접수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협의회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공사 사장은 협의회에서 선정된 사업자와 사업개시 전에 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퓨즈콕을 설치하고 가스누출 여부 및 마감조치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는 철거한 호스콕 반납과 함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공사 사장에게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⑥ 공사 사장은 퓨즈콕 설치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사업계약에 따른 사업비를 지급한다.
 - ⑦ 공사 사장은 사업비가 지급된 후에도 사업자가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퓨즈콕을 설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사업비를 회수한다.

제5조(기타)

- ① 공사 사장은 사업 종료시 지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지원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사업의 주관기관이 된다.
- ③ 공사 사장은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2005년도 LP가스안전기기보급지원사업 운영지침(2005. 1. 18,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14호, 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의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지원사업은 운영지침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 고객지원처를 말한다.
2. “사업부서”라 함은 공사 지역본부(지사)를 말한다.
3. “소비자”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한 추진협의회에서 선정된 사업자를 통해 퓨즈콕설치가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제4조 (사업자 신청)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자가 소재한 지역의 사업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퓨즈콕 설치계획서
2. LP가스 판매사업자 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제2종 이상 가스시설시공업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 포함)
5. 공동참여 확인서(공동사업자에 한함)

제5조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은 사업부서의 지역본부장(지사

장)으로 한다. 다만, 지역본부장(지사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부서 담당부장으로 한다.

2.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가. 지방자치단체 가스담당 공무원
- 나. 사업부서 담당부장 또는 담당과장
- 다. LP가스 판매사업자단체의 임원 2인 이상. 다만, 사업자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사업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판매사업자를 대표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2인 이상

라.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전문 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위원장은 지원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며 추진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추진협의회는 연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에 심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추진협의회의 전반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사업부서 담당자를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⑥ 추진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지원사업을 수행할 사업자의 선정
 - 2. 지역별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 3. 기타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 (사업자 선정 기준)

- ① 사업자는 제2종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한 LP가스 판매사업자로 한다.
- ② 사업부서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확인 또는 서류보완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1. 퓨즈콕 설치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

2. 공사가 인정하는 LP가스판매 우수인증업체

3. 안전관리종합평가 점수가 전체 상위 25% 이내인 사업자

4. 퓨즈콕 설치 계획 수량이 많은 사업자

④ 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계약 체결)

사업부서는 사업자와 사업개시 전에 공사 회계처리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퓨즈콕의 구입 및 설치 등 사업착수)

- ① 설치기간은 사업계약을 체결한 기간과 같다.
- ② 설치대상은 퓨즈콕이 미설치된 주택용 LP가스 사용시설이며, 사업비는 1가구당 1개의 퓨즈콕에 대하여 지원한다.
- ③ 사업자는 퓨즈콕을 설치시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퓨즈콕 핸들에 다음과 같이 스티커가 부착된 퓨즈콕을 직접 구입하여 설치한다.

가스안전기기보급지원사업
(산자부·가스안전공사)

스티커 크기
24mm(가로)×8mm(세로)

- 2. 가스누출, 마감조치, 호스밴드고정 여부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퓨즈콕을 설치한 후에는 설치현황(별지 서식 제4-1호)을 작성하고 소비자로부터 확인날인을 받아야 한다.
- 4.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호스콕은 회수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시 사업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 5. 사업자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추가경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사업비 신청 및 지급)

- ① 사업비 신청기간은 사업계약을 체결한

-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사업자는 철거한 호스콥 반납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부서에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신청서
 2. 퓨즈콥 설치현황
 3. 사업자 변경 신청서(거래은행변경등의 사유발생사업자에한함)
 4. 세금계산서
 5. 거래은행 통장사본
- ③ 퓨즈콥 설치수량과 철거한 호스콥 수량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④ 사업부서는 사업자가 신청한 퓨즈콥 설치 전체가구에서 아래 표와 같이 표본확인 수량을 임의로 선정하여 퓨즈콥 설치 여부를 우선 등으로 소비자에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지원금 신청가구수	10가구 이하	11~100가구	101가구이상
표본선정수	전수	10가구 이상	신청가구수의 1/10 이상

- ⑤ 표본확인 결과에 따른 사업비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퓨즈콥 표본확인 가구 모두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비를 지급한다.
 2. 퓨즈콥 표본확인 가구중 1가구 이상 미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비 신청서를 반려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반려된 신청서를 확인하고 퓨즈콥을 설치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 제2호에 따라 사업비를 재신청할 경우에는 표본확인 수량을 제4항 표의 2 배수로 임의로 선정하여 확인한다.

제10조 (사업자 취소)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취소한다.
1. 퓨즈콥 보급사업에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퓨즈콥 설치 실적이 없는 사업자
 2. 허가취소, 사업정지 등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업자

3. 제7조에 의한 사업계약을 위반한 사업자

제11조 (사업성과의 평가 등)

- ① 사업부서는 퓨즈콥 설치현황 및 사업비 지급현황 등을 격월로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사업종료 후 주관부서는 지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주관부서는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퓨즈콥 보급 지원사업 진행현황 및 설치현황에 대하여 사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후관리)

- ① 사업부서는 사업비 지급 후에라도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퓨즈콥을 설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업비 회수 및 사업자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는 퓨즈콥 설치현황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D/B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 ③ 회수된 호스콥은 추진협의회 위원장 책임하에 확인하고 기능이 상실되도록 폐기한다.

제13조 (기 타)

이 규정외에 필요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